

#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6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제도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, 교통소통 대책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통현황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장기간 (1년 이상)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함 (안 제4조)
- 나. 실효성 높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시기를 구분함 (안 제4조)
- 다.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으로 확대 변경함 (안 제8조)
- 라. 도로점용공사 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항을 추가함 (안 제13조)
- 마. 교통소통대책 결과물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공사단계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및 대행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함 (안 제14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법 시행령 제54조,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4항

나. 예산조치 : 총 29백만원

구 분	산 출 내 역	금 액	비 고
계		29,214천원	
주요내용 다 관련 (서울형 생활임금제 임금)	· 1,623천원×2명×9개월	29,214천원	보험료 포함

※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예산 (서울형 생활임금제 임금 기준)

#### 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수정의결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의견없음

※ 예사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(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1조)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
#### 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7.04.13~05.02.) 결과: 제출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교통운영과 교통운영팀 백바름 (☎ 2133 - 2466)

##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도로법」 제11조”를 “「도로법」 제14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 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
2. 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

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8조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자 중”을 “사람 중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도로법」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”를 “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”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원상회복) 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)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, 공사 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다만,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각 호-----.
1. 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 제11조에 따른 “특별시도”를 말한다.	1. ----- 「도로법」 제14조----- -----.
2.、3. (생략)	2.、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단,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.
<신설>	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8조(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)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	제8조(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) ①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

<p>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-----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1. <u>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2. <u>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② <u>제8조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.</u></p>
<p>제9조(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략)</p>	<p>제9조(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 중에서</u>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<u>사람 중</u> -----.</p>
<p>1. 2. (생략)</p>	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~ ⑧ (생략)</p>	<p>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<u>고발조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----- ----- ----- <u>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</u> <u>하여야</u> -----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13조(원상회복) ① 공사를 시행한</u></p>

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제14조(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 사항)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,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다만,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.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
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제8조(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) 제2항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(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조)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- 추계결과 : 연간 약 29,214천원

4. 작성자

-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백바름